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1. 9. 1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9월 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9월 3일 회부

다. 상 정 일 자 : 제84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1년 9월 10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유근)

가. 제정이유
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(1) 기금의 재원(안 제4조)

- (가)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
- (나) 영등포구의 출연금
- (다)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- (라) 기타 수익금

(2) 기금의 용도(안 제5조)

- (가)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
- (나)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
- (다)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(3) 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7조)

- (가) 9인 이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
- (나) 당연직 : 생활복지국장, 도시관리국장, 건설교통국장
- (다) 위촉직 : 영등포구의회 의원,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
(4) 심의회의 기능(안 제8조)

- (가) 기금관리·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(나) 기금의 조성·적립·운용 및 결산
- (다)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민창규)

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조성(재원)은 장애인 등의 각종 편의시설의 지정명령을 이행치 아니한 시설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징수액의 50%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징수

규모가 적고 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,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요 재원인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편성시 이행강제금 예상액과 연계하여 출연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일시에 기금확보보다는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안정적인 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됨.

조례안 제5조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기금의 주요 용도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용자 또는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, 이는 기금의 목적에 상응할 것으로 보여짐.

조례안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은 기금의 관리·운용계획수립·조성·결산을 위해 9인 이내로 심의회를 구성토록 하였는데 인원이 부족한 감이 있고 사안을 좀더 신중히 처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위촉직인 구의원과 장애인 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위촉직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민간 분야 경험자의 의견을 듣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짐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(안)

의안 번호	19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9. 3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기금의 재원(안 제4조)

- 1)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정수액의 100분의 50
- 2) 영등포구의 출연금
- 3)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- 4) 기타 수익금

나. 기금의 용도(안 제5조)

- 1)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
- 2)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
- 3)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다. 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7조)

- 1) 9인 이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
- 2) 당연직 : 생활복지국장, 도시관리국장, 건설교통국장
- 3) 위촉직 : 영등포구의회 의원,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
라. 심의회의 기능(안 제8조)

- 1) 기금관리·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) 기금의 조성·적립·운용 및 결산
- 3)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지방자치법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
- 2)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(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)

나. 예산조치

- 1) 조례 제정 후 일반회계 출연금 조성
- 2)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 등”이라 함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.
2. “편의시설”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
3. “시설주”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설치)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한다.

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
2. 영등포구의 출연금
3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4. 기타 수입금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
2.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
3.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기금은 구청장이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②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생활복지국장
2. 기금출납원 :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

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

제7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생활복지국장, 도시관리국장, 건설교통국장
2. 영등포구의회 의원
3.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④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.

제8조(심의회의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관리·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·적립·운용 및 결산
3.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9조(심의회의 회의) ①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기금운용계획 등)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.

②기금관리·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
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2조(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) ①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을 법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한다.

②기금의 용자절차, 용자한도액 및 용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용자·보조금의 관리) ①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및 보조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시설주가 용자금 및 보조금을 사용용도에 반하여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자금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.

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를 준용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